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부적정

소 관 기 관 남양주시

조 치 기 관 남양주시

내 용

1. 업무 개요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남양주 상수도 조례”라 한다)¹¹⁰⁾에 따라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¹¹¹⁾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등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남양주 상수도 조례 제5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대규모 시설에 대한 부담금¹¹²⁾은 아래와 같이 ‘단위사업비(총사업비/용수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수요량’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110)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르면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위 조례 제정 전에는 1997년 12월부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함

111) 「수도법」 제3조에 따르면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함

112) 남양주 상수도 조례 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남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용수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수요량

• 총사업비: 설계비 등 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총사업비 66,190백만 원

• 용수량: 수도시설로 공급 가능한 수돗물의 양 68,000m³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건설사업의 수돗물 수요량: 세대수 × 인원수 × 325L¹¹³⁾ × 1.25(첨두계수¹¹⁴⁾)

※ 단위사업비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중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따라서 남양주시는 부담금 산정 시 수도시설의 증설 등으로 총사업비 등 개별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남양주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남양주시는 2007. 1. 10.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총사업비 66,190백만 원, 용수량 68,000m³,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건설사업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 관련 1인당 일평균 급수량(325L) 및 첨두계수(1.25)를 정한 후, 2018년 5월 현재까지 총사업비 등 개별 산정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수도시설¹¹⁵⁾의 증설 등에 따라 총사업비는 216,773백만 원으로, 용수량은 205,000m³로 증가¹¹⁶⁾한 것으로 나타났다.

113) 325L: “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인당 일평균 급수량

114) 첨두계수: 최대 급수 시의 여유율(“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수)

115) 남양주시 수도시설 현황(준공연도, 시설용량): 남양주시 도곡정수장(1994년, 16,000m³), 화도정수장(2000년, 55,000m³), 서울특별시 강북정수장(1999년, 60,000m³),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3단계(1989년, 19,000m³), 4단계(1994년, 24,000m³), 5단계(1999년, 24,000m³), 6단계(2004년, 50,000m³) 등 총 6개 시설, 시설용량 248,000m³

116)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3·4단계 총사업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총사업비 및 용수량에서 제외함

그리고 2015년 6월 “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건설사업의 수도물 수요량 산정 관련 1인당 일평균 급수량은 278L로, 첨두계수는 1.23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총사업비, 용수량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한 결과, 남양주시는 [표]와 같이 2014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부담금 538건에 대하여 정당 부과액 20,735,658,000원보다 5,963,947,000원만큼 과다 부과하고 있었다.

[표] 남양주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다 부과액 현황

(단위: 건, 원)

부과기간	건수	실제 부과액(A)	정당 부과액(B)	과다 부과액(A-B)
계	538	26,699,605,000	20,735,658,000	5,963,947,000
2014. 1. 1.~2014. 1. 31.	2	14,025,000	9,701,000	4,324,000
2014. 2. 1.~2015. 1. 31.	102	3,571,261,000	2,568,926,000	1,002,335,000
2015. 2. 1.~2016. 1. 31.	91	3,435,966,000	2,385,857,000	1,050,109,000
2016. 2. 1.~2017. 1. 31.	151	7,324,922,000	5,646,445,000	1,678,477,000
2017. 2. 1.~2018. 1. 31.	188	12,206,823,000	9,987,357,000	2,219,466,000
2018. 2. 1.~2018. 2. 28.	4	146,608,000	137,372,000	9,236,000

주: 변경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건설사업의 수도물 수요량 산정 관련 1인당 일평균 급수량(278L) 및 첨두계수(1.23)는 “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공고일인 2015. 6. 9.부터 적용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남양주시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남양주시 상수도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양주시장은 수도시설의 증설 등에 따라 변경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